

니제르 (Niger)

◎ 주요 변동사항

| 구 분 | 2017 | 2019 | 비 고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사회보험 당연적용대상 | 민간부문, 비공무원 공공부문 근로자, 기술학교 학생, 견습생 | 민간부문, 비공무원 공공부문 근로자, 기술학교 학생, 견습생 | - |
| 사회보험 적용제외 | 자영자 | 자영자 | - |
| 보험료율 | 11.5% | 11.5% | - |
| 보험료 부과 상한 / 하한 소득 | 500,000 CFA francs / 월 30,047(최저임금) | 500,000 CFA francs / 월 30,047(최저임금) | - |
| 연금수급 요건 | - 노령연금 : 60세, 가입기간 180개월 이상 - 노령청산금 : 60세, 가입기간 180개월 미만 | - 노령연금 : 60세, 가입기간 180개월 이상 - 노령청산금 : 60세,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180개월 미만 - 가입기간 크레딧 인정 가능 | 노령청산금 최소 가입기간, 크레딧 인정 제도 신설 |
| 노령연금 지급률 | 월평균소득에 대하여 2012.1.1. 이전 가입기간에 대해 최초 15년 20%, 이후 12개월당 1.33% + 2012.1.1. 이후 가입기간에 대해 최초 15년 30% 이후 12개월당 2% | 월평균소득에 대하여 2012.1.1. 이전 가입기간에 대해 매 12개월당 1.33% + 이후 가입기간에 대해 2% | 연금 산식 변경 |
| 일시금 | 가입기간 1년마다 평균소득월액 1개월 치 지급 | 가입기간 1년마다 최종 3년 또는 5년 가입기간 평균소득월액 중 큰 금액 1개월 치 지급 | 일시금 산식 변경 |

1 근거법 제정 시기

- 최초법 및 현행법 : 1967년(노령, 장애, 유족)

2 제도형태

- 사회보험제도(social insurance system)

3 적용대상

- 당연적용 : 민간부문 근로자, 비공무원 공공부문 근로자, 기술학교 학생, 견습생
- 임의적용 : 적어도 6개월 연속 가입기간이 있는 가입자였던 자
- 적용제외 : 자영자
- 특별제도 : 공무원

4

재원조달

- 가입자 : 월 가입소득의 5.25%
 - 보험료 부과 하한소득 : 법정최저임금(월 30,047 CFA francs)
 - 보험료 부과 상한소득 : 월 500,000 CFA francs

- 자영자 : 해당 없음

- 사용자 : 월 임금지급총액의 6.25%
 - 보험료 부과 하한소득 : 법정최저임금(월 30,047 CFA francs)
 - 보험료 부과 상한소득 : 월 500,000 CFA francs
 - ※ 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은 월납, 20인 미만 사업장은 분기납

- 정부 : 없음, 비공무원 공공부문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로서 납부

5

급여종류별 수급요건

- 노령연금
 - 노령연금
 - 60세(조로(早老)의 경우 55세) 이상, 가입기간 180개월 이상
 - 현금 질병, 출산, 산재 급여수급 및 군복무 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크레딧 인정 가능
 - 고용은 중단되어야 함
 - 연금의 국외지급은 상호 협정을 통해서 가능
 - 노령청산금
 - 60세(조로(早老)의 경우 55세) 이상,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180개월 미만
 - 현금 질병, 출산, 산재 급여수급 및 군복무 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크레딧 인정 가능
 - 고용은 중단되어야 함
 - 청산금의 국외지급은 상호 협정을 통해서 가능

- 장애연금
 - 장애연금
 - 소득활동능력 66.7% 이상 상실로 판정되고, 가입기간이 60개월(장애시작 직전 12개월 중 최소 6개월 이상 포함) 이상인 경우
 - 장애가 산업재해와 무관한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만 해당
 - 현금 질병, 출산, 산재 급여수급 및 군복무 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크레딧 인정 가능
 - 상시간호보호조금 : 수급자가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 지급
 - 장애연금은 정상퇴직연령 도달 시, 동일한 금액의 노령연금으로 대체됨
 - 가입자는 국가사회보장기금이 지정하거나 승인한 의사로부터 정기적인 의료검진을

- 받아야 함(최초 2년간은 6개월마다, 이후 1년마다)
- 장애연금의 국외지급은 상호 협정을 통해서 가능

○ 유족연금

• 유족연금

- 사망자의 가입기간이 180개월 이상이거나 사망 당시 노령 또는 장애연금 수급자였거나 수급자격이 있었던 경우
- 현금 질병, 출산, 산재 급여수급 및 군복무 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크레딧 인정 가능
- 수급권 있는 유족은 피부양 자녀가 있는 유족배우자로서 가입자 사망 전 결혼기간이 1년 이상인 자와 16세 이하 고아(견습생의 경우 18세, 학생 또는 장애가 있는 경우 21세)
- 배우자 유족연금은 재혼할 경우 정지됨
- 유족연금 수급 중인 고아는 가족 수당 수급 불가
- 유족연금의 국외지급은 상호 협정을 통해서 가능

• 유족청산금

- 사망자가 사망 당시 장애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, 가입기간이 180개월 미만인 경우
- 현금 질병, 출산, 산재 급여수급 및 군복무 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크레딧 인정 가능
- 수급권 있는 유족은 피부양 자녀가 있는 유족배우자로서 가입자 사망 전 결혼기간이 1년 이상인 자와 16세 이하 고아(견습생의 경우 18세, 학생 또는 장애가 있는 경우 21세)
- 유족청산금은 가족 수당과 함께 수급 가능

6

급여종류별 지급액

○ 노령연금

• 노령연금

- 2012년 1월 1일 이전 가입기간에 대해 매 12개월 당 1.33%씩 + 2012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 대해 매 12개월 당 2%
- 최저연금액은 법정최저임금(월 30,047 CFA francs)의 60%
- 연금급여는 분기 단위로 지급
- 급여조정 : 급여는 연금제도의 재정 상황을 감안, 생계비와 법정최저임금의 변동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조정

• 노령청산금

- 가입기간 1년마다 가입자의 최종 3년 또는 5년간의 월 가입소득 평균치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일시금으로 지급

○ 장애연금

• 장애연금

- 2012년 1월 1일 이전 가입기간에 대해 매 12개월 당 1.33%씩 + 2012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 대해 매 12개월 당 2%

- 최저연금액은 법정최저임금(월 30,047 CFA francs)의 60%
- 상시간호보조금 : 장애연금액의 50%
- 연금급여는 분기 단위로 지급
- 급여조정 : 급여는 연금제도의 재정 상황을 감안, 생계비와 법정최저임금의 변동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조정

○ 유족연금

• 유족연금

- 배우자 유족연금 : 사망자가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자격을 충족했던 노령 또는 장애 연금액의 50%(유족 배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균분 지급)
- 고아연금 : 고아 1인당 사망자가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자격을 충족했던 노령 또는 장애 연금액의 25% 지급(완전 고아인 경우 1인당 40% 지급)
- 최저고아연금액은 가족수당과 동일함
- 합산된 유족연금 총액은 사망자 연금액의 100%를 초과할 수 없음

• 유족청산금

- 사망자가 180개월 이상의 가입기간이 있다면, 가입기간 6개월 당 사망자가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자격을 충족했던 노령 또는 장애연금의 1개월분씩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(유족 배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균분 지급)

7

관리운영기관

○ 고용노동사회보호부(Ministry of Employment, Labour and Social Protection)

- 전반적인 관리·감독
- <http://www.gouv.ne>

○ 국가사회보장기금(National Social Security Fund)

- 3자 위원회 및 총장의 지시에 따라 제도 운영

<2019년 ISSA 자료>